# 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|---|---|
| 합 계 | 681,729,135 | 20,451,874 |
| 일반회계 | 620,416,095 | 18,612,483 |
| 특별회계 | 61,313,040 | 1,839,391 |
| 공기업특별회계 | 30,452,700 | 913,581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8,967,114 | 569,013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11,485,586 | 344,568 |
| 기타특별회계 | 30,860,340 | 925,81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2,583,600 | 77,508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2,342,223 | 70,267 |
|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| 288,000 | 8,640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| 1,028,664 | 30,860 |
|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| 3,675,000 | 110,25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271,757 | 8,153 |
| 도시개발특별회계 | 722,940 | 21,688 |
| 지하수관리특별회계 | 492,124 | 14,764 |
|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| 3,263,700 | 97,911 |
|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| 7,268,910 | 218,067 |
|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| 2,735,309 | 82,059 |
|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| 6,188,113 | 185,643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다"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743,198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8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특별교부금(세), 특정목적기부금,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(성립전집행)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